

2026년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비R&D)」 3차 모집 공고

경남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현지실증·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비R&D)」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0.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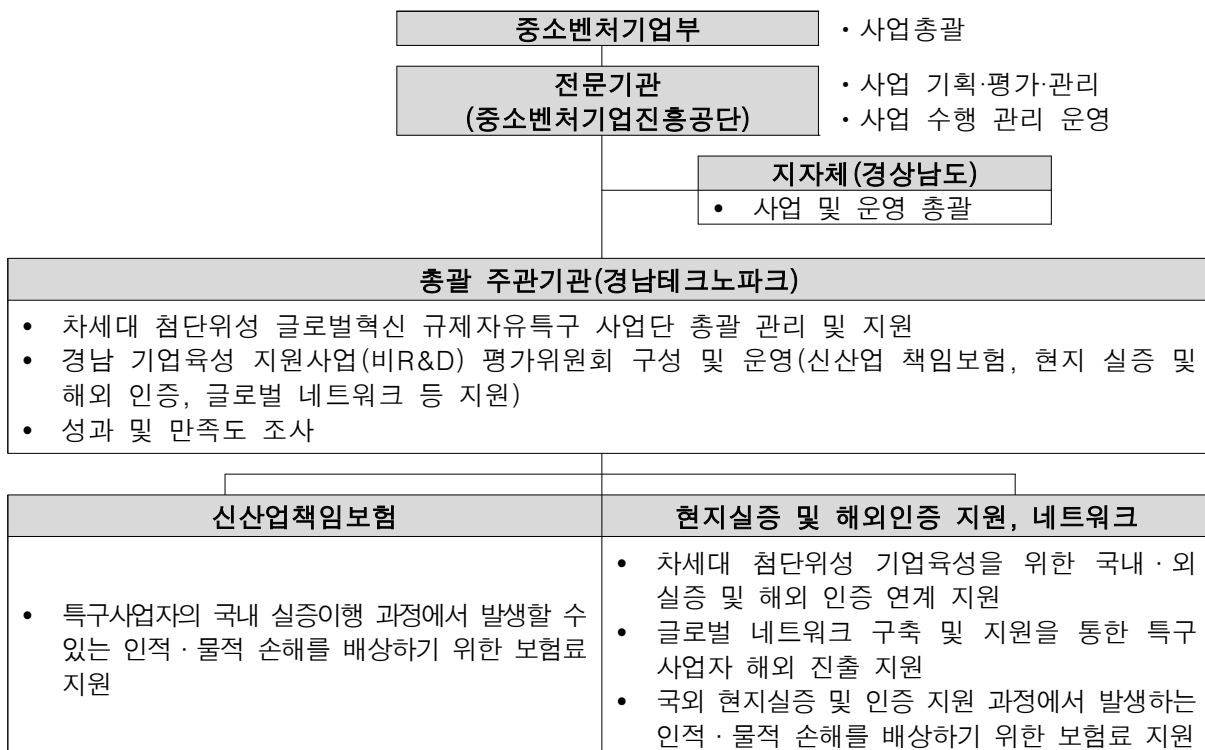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규제특례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한 규제 특례 개선 방안 마련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특구명	특구 지정기간
1	경상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25.6.1.~'29.12.31.

나. 추진체계



가.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 공모방식
 - － 자유공모(특구사업자별 규제특례확인서 기반 제안서 제출)

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5.5.22)에서 선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6.5)에서 선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 신청자격 (아래 내용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 전까지 특구 내 본사 · 지사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특구 내에서 활발히 연구활동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 보험 가입 및 글로벌 진출(현지실증 · 해외인증)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사업내용	지원기업 수	기업당 정부지원금*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신규)	1개 기업 내외**	200백만원/년 내외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추가)	6개 기업 내외	80백만원/년 내외
■ 정부지원금 - (국비)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 지원금의 70%이하 (최대 238만원) - (지방비)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 지원금의 20%이상 (최대 68만원) ■ 민간부담금 10%이상 - 최종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비중 : 중소기업 30%이상, 중견기업 50%이상)		
※ 예시1) 150백만원 사업계획서 작성시 ⇒ 국비지원 73.5백만원 기준, 지방비 21백만원, 민간부담금 10.5백만원 ※ 예시2) 340백만원 사업계획서 작성시 ⇒ 국비지원 238백만원 기준, 지방비 68백만원, 민간부담금 34백만원		

*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

* 지원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6년 11월 30일까지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신규)

- 추진목적 :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한 규제 특례 개선 방안 마련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최대 200백만원/년 이내)
 - (지원한도) 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40백만원(민간 20백만원) 매칭

구분	내용
지원방식	○ 각 과제별로 전문기관, 주관기관, 수혜기업 간 3자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의 지원기간으로 설정 ○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은 협약 후 2차 분할 지급 사업비 지급(1차) '26년 09월 → 사업비 진도점검 '26년 10월 → 사업비 지급(2차) '26년 10월

- 해외인증 및 현지실증 지원내용
 - (해외인증) 국내 기준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 국내 인증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증 취득을 지원
 - ※ 단,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지원 제외
 - (현지실증) 해외에서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적용이 제한되는 첨단기술에 대해, 해외 클러스터·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을 지원

지원유형	지원방향
컨설팅	• 특구사업자별 보유 기술, 규제(법령개정), 필요 시험·인증, 글로벌 시장진출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원 •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및 중간점검 기반 지속 관리, 최종 결과 분석 수행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자별 분야·대상 세분화 및 기술·인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국내 검증 시험 분석 및 장비활용지원	• 해외 인증 및 실증을 수행하기 전 우주 환경 검증을 위한 부품제작, 컨설팅, 분석 및 시험 비용 지원 • 국내·외 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 시험 장비 활용지원
국외 검증 지원	• 특구 사업자가 개발한 우주 개발 절차, 부품(기술), 위성 인프라 등에 대해글로벌 인증기관 협업을 통한 검증 지원
국외 실증 지원	• 위성 제작 결과 검토 비용 지원 • 궤도상 성능 실증을 위한 지상국 활용 지원 • 상용부품 및 타 위성체 등을 활용한 우주 부품 궤도상 실증 비용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특구사업자의 부품 및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박람회, 우주산업 기술 교류회 등 참가 지원

지원유형	지원방향
협력 네트워크	① 특구사업자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 컨설팅과 협력 네트워크로 자문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시 함
	② University of Surrey · University of Surrey는 대한민국 국적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관련 연구 및 시험/평가/인증 관련 글로벌 기관임 ❶ SSC와 SSTL이 보유하고 있는 궤도상 전력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기술 ❷ 고에너지밀도 및 고안전성 우주용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태양전지 개발 절차 및 요구조건 ❸ 초경량 우주태양전지-우주용 배터리-전력변환장치를 통합한 플랫폼 개발 및 검증 ❹ 유럽 기준 위성 시스템 검증 요구 조건 및 수행 절차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2차 모집 시 제출한 서류 중 수행계획서를 제외한 동일 서류는 재제출 생략 가능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비R&D 수행계획서	PDF/한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PDF	
3	재무제표(최근 3개년), 외감법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PDF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6	법인등기부등본	PDF	
7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PDF	서식 2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서식 3
9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PDF	서식 4
10	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	PDF	서식 5
11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PDF	서식 6
12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7
13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	PDF/한글	서식 8
선택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PDF	가산점
선택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확인서(증빙서류)	PDF	가산점
선택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PDF	가산점

2)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추가)

- 추진목적 :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한 규제 특례 개선 방안 마련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최대 80백만원/년 이내)
 - (지원한도) 국비 56백만원, 지방비 16백만원(민간 8백만원)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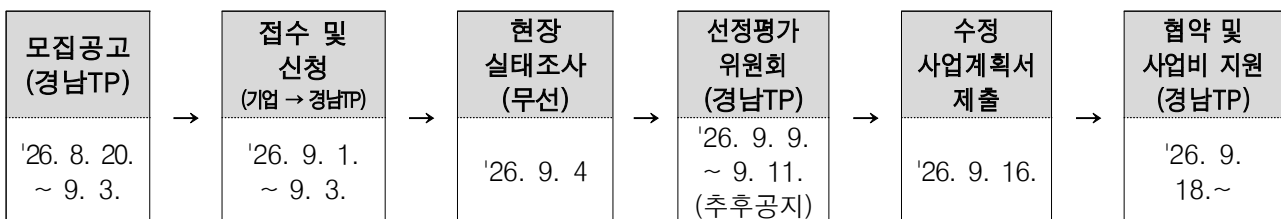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방식	○ 각 과제별로 전문기관, 주관기관, 수혜기업 간 3자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의 지원기간으로 설정 ○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은 협약 후 2차 분할 지급 사업비 지급(1차) → 사업비 진도점검 → 사업비 지급(2차) '26년 09월 → '26년 10월 → '26년 10월

- 해외인증 및 현지실증 지원내용
 - (해외인증) 국내 기준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 국내 인증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증 취득을 지원
 - ※ 단,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지원 제외
 - (현지실증) 해외에서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적용이 제한되는 첨단기술에 대해, 해외 클러스터·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을 지원

지원유형	지원방향
컨설팅	• 특구사업자별 보유 기술, 규제(법령개정), 필요 시험·인증, 글로벌 시장진출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원 •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및 중간점검 기반 지속 관리, 최종 결과 분석 수행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자별 분야·대상 세분화 및 기술·인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국내 검증 시험 분석 및 장비활용지원	• 해외 인증 및 실증을 수행하기 전 우주 환경 검증을 위한 부품제작, 컨설팅, 분석 및 시험 비용 지원 • 국내·외 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 시험 장비 활용지원
국외 검증 지원	• 특구 사업자가 개발한 우주 개발 절차, 부품(기술), 위성 인프라 등에 대해글로벌 인증기관 협업을 통한 검증 지원
국외 실증 지원	• 위성 제작 결과 검토 비용 지원 • 궤도상 성능 실증을 위한 지상국 활용 지원 • 상용부품 및 타 위성체 등을 활용한 우주 부품 궤도상 실증 비용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특구사업자의 부품 및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박람회, 우주산업 기술 교류회 등 참가 지원

지원유형	지원방향
협력 네트워크	① 특구사업자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 컨설팅과 협력 네트워크로 자문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시 함
	② University of Surrey · University of Surrey는 대한민국 국적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관련 연구 및 시험/평가/인증 관련 글로벌 기관임 ❶ SSC와 SSTLI이 보유하고 있는 궤도상 전력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기술 ❷ 고에너지밀도 및 고안전성 우주용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태양전지 개발 절차 및 요구조건 ❸ 초경량 우주태양전지-우주용 배터리-전력변환장치를 통합한 플랫폼 개발 및 검증 ❹ 유럽 기준 위성 시스템 검증 요구 조건 및 수행 절차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2차 모집 시 제출한 서류 중 수행계획서를 제외한 동일 서류는 재제출 생략 가능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비R&D 수행계획서	PDF/한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PDF	
3	재무제표(최근 3개년), 외감법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PDF	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6	법인등기부등본	PDF	
7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PDF	서식 2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서식 3
9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PDF	서식 4
10	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	PDF	서식 5
11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PDF	서식 6
12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7
13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	PDF/한글	서식 8
선택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PDF	가산점
선택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확인서(증빙서류)	PDF	가산점
선택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PDF	가산점

3) 규제 특례 적용 및 가이드

가. 규제 특례 현황

※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는 위성부품의 검증체계 마련, 민간플랫폼 구축, 위성 관제, 우주물체 위험관리 등으로 구성

법조항	현행	규제개선(안)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성개발 체계 및 우주부품의 실증 지원 2. 민간 우주기술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지원 3. 그 밖에 우주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④ 우주소자·부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서 정한 것을 우주소자·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기관, 우주소자·부품 개발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우주물체 관측 및 서비스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우주잔해물에 대한 위험 대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	-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민간위성 관제 절차 2. 민간위성정보의 저장 형태 3. 민간위성정보의 분류 체계 4. 민간위성정보의 처리·배포 5. 민간위성정보의 처리기술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9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9조(인공위성의 관제) 인공위성의 상태 점검,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및 임무 명령의 송신 등 인공위성의 관제는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9조(인공위성의 관제) 인공위성의 상태 점검,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및 임무 명령의 송신 등 인공위성의 관제는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단, 민간위성의 경우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메뉴판) 지역특구법 제48조	지역특구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특구법상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나. 규제특례 작성 가이드

〈예시1: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3항〉

실증 특례		타깃 법령
① 실증 특례 : 1개 ■ 우주 궤도상에서 인공우주물체에 접근, 작업 및 인공우주물체 처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절차 허용		①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3항 * 우주항공청(우주위험대응과) ※ 6호, 7호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가능
② 세부사업 : 1개		
특구사업자	수행 과제명	주요 실증 내용
(제안기업명)	차세대 첨단위성 주변 우주물체 관측과 자체 폐기기술 실증	• 근접 우주물체 관측용 광학 카메라 및 알고리즘 실증 • 임무 종료 위성의 궤도 이탈을 위한 자체 폐기 장치(PMD)실증

〈예시2: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

실증 특례		타깃 법령
① 실증 특례 : 1개 ■ 민간의 위성 개발 절차, 체계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 * 우주항공청(인공위성임무보증프로그램) ※ 3항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가능
② 세부사업 : 3개		
특구사업자	수행 과제명	주요 실증 내용
(제안기업명)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	• 경남형 전주기 관리체계(G-SMA) 절차 초안 수립 • 민간 기업용 위성 개발 가이드라인 및 SE(Systems Engineering) 절차서 마련
(제안기업명)	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 임무 및 시스템 요구조건 확정 • 서브시스템 상세 설계 및 제작, 특구사업자 부품 통합 및 인터페이스 실증 등
(제안기업명)	디지털트윈 환경기반 가상 실증환경 구축	• 위성 발사 전 가상 공간에서 실제 위성과의 동일한 환경을 재현하여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

〈예시3: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

실증 특례		타깃 법령
① 실증 특례 : 1개 ■ 우주소자·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검증 기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우주개발 진흥법」제18조 *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기반과) ※ 4항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가능
② 세부사업 : 6개		
특구사업자	수행 과제명	주요 실증 내용
(제안기업명)	차세대 첨단위성 상용부품(COTS) 검증 체계 구축	• K-COTS 검증 로드맵 및 부품별 검증 절차서 개발 • 우주 부품 신뢰성 정보 제공을 위한 지능형 DB 구축
(제안기업명)	모터 드라이버 유닛 개발	• COTS 기반의 안테나 구동 및 자세제어용 모터 드라이버 실증
(제안기업명)	부품 실증용 반작용 휠(RW) 개발	• 50mNms급 반작용 휠의 설계·제작 및 우주 환경 안전성 검증
(제안기업명)	인공위성용 배터리팩 국산화 및 실증	• 모듈형 배터리팩(2S1P, 4S1P 등)의 우주 환경 성능 실증
(제안기업명)	위성 시스템 및 부품 열/구조/전자파 분석 모델 개발	• 상용부품(OBC 등)의 EMI/EMC 분석 모델 및 검증 기술 실증
(제안기업명)	초소형 위성 프레임 모델링 및 제작	• 적층제조(3D 프린팅) 공법을 활용한 위성 경량 프레임 실증
(제안기업명)	초소형 위성 프레임 모델링 및 제작	• 위성 프레임 제작 공정 및 적층 시편의 물성 데이터 확보 협력

〈예시4: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의3,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 제9조〉

실증 특례		타깃 법령
① 실증 특례 : 1개 ■ 민간 위성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민간 위성 관제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 제5항, 제6항 ②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3 ③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9조 * 우주항공청(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② 세부사업 : 1개		
특구사업자	수행 과제명	주요 실증 내용
(제안기업명)	혁신특구 기반 위성 지상국 구축 및 해외 인증 대응 컨설팅	• 위성 관제(MCE), 영상 처리(IPE), 우주 통신(SCE) 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 실증

4) 박람회 가이드

-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및 부품 홍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 제시
- 호주 국립 과학 주간 (National Science Week)

일정	26. 8. 15. ~ 26. 8. 23 *8월 2주차(8월 10일경)부터는 각 주(State)별로 사전 로드쇼와 홍보 행사가 시작
장소	호주 전역 주요 도시 (캔버라, 시드니, 브리즈번 등) *공식 런칭 행사는 퀸즐랜드(QLD)의 윈턴(Winton)에 있는 Waltzing Matilda Centre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기도 하며, 주요 비즈니스 미팅은 보통 캔버라(Questacon)나 시드니 지역에서 집중됨
주요 내용	호주 전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과학 축제로, 호주 우주국 (Australian Space Agency)과 협력하여 다양한 우주 관련 로드쇼와 체험형 전시

- 독일 브레멘 우주 기술 박람회 2026(Space Tech Expo Europe 2026)

일정	26. 11. 17. ~ 26. 11. 19.
장소	독일 브레멘, Messe Bremen
주요 내용	- 전시 분야: 위성 제조, 발사체 개발, 소재 및 구성 요소, 시험 · 검사 서비스 등 우주 산업 최신 기술 및 제품 전시 - 컨퍼런스: 우주 산업(Space Industry) 및 소형 위성(SmallSat)을 주제로 수십 명의 전문가 강연 진행 - 네트워킹: B2B 매칭 서비스 및 전 세계 우주 분야 기업 · 연구기관 간의 기술 협력 파트너 발굴

5) 선정절차: 공고를 통한 실증 및 인증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관련 전문가 및 TP 등 6인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식)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지원 적정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 *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 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유선 점검으로 대체 가능하나,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평가방법) 대면평가 시 제안서 또는 별도 발표 자료(PPT 등)를 활용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함. 단,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실증 및 인증 선정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I. 대표자 및 경영관리 (30점)	1.1 대표자 전문성, 신뢰성	20
	1.2 해외시장 진출 의지	5
	1.3 경영관리수준	5
II. 기술성 및 사업성 (40점)	2.1 기술 우위성/차별성 - 지원에 따른 개발 기술(제품)의 우수성	10
	2.2 연구/기술 역량 - 글로벌 진출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방안	10
	2.3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연계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등	10
	2.4 사업성 -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10
III. 기여도(30점)	3.1 지역사회 기여/영향력 -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목적과의 부합성	30
IV. 가점사항	4.1 중소벤처기업	5
	4.2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5
	4.3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5
합계(100점)		100

바.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수혜기업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집행
 - 협약체결 후 과제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시 비R&D 지원금의 2회 분할 지급
 - 총 사업비 기준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클린카드 발급 후 사업비 사용 필수
 - ※ 특구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및 필요시 전문기관 협의
 - ※ 국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 및 상시 관리
 - ※ 지방비, 민간부담금: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오프라인으로 집행 및 관리 (재원별로 통장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
- (사용방식) 모든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는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 사용만 인정
 - ※ 관련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 사업비(국비) 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하되, 클린카드 신청서 사본을 협약 시 제출
- (집행 가능 항목)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 현지실증 및 해외 인증 사업제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작성 시 아래 표의 “보조세목” 항목으로 작성

보조세목	내 용
공공요금및제세	• (보험료)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기술협력, 교류 등을 위한 국외기관 컨설팅 등
재료비 등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 기성품, 완제품 등 재산성 물품 구매 불가
일반용역비 등	• (외주용역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보조세목	내 용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등 (자본적 경비 제외)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
보수 / 일용임금 등	• (인건비)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직접참여: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가는 소속 직원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등	• (지급수수료)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 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으로 집행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여비·체제비)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여비 규정을 따름
일반수용비 등	• (광고 선전비)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료	• (임차료)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

* 모든 물품 구매, 용역비 등은 국가계약법 계약절차(조달청, 수의계약)에 따라 진행. 단, 주관기관 (경남테크노파크)이 국외기관과 MOU를 맺은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해도 수의계약 범주 내 계약이 가능함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지원제외 대상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 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단,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시작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시작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사업 계획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사전검토
기준
(요령 제16조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 ‘BBB’ ,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④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한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 수

－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타 과제의 잔여기간이 협약 시작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사업화지원,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장관이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 무 불 이 행 및 부 실 위 험	○ 휴 ·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table><tr><th>업종 분류</th><th>산업분류코드 (KSIC)</th><th>지원제외 업종</th></tr><tr><td rowspan="2">제 조 업</td><td>33402中</td><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tr><tr><td>33409中</td><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td></tr><tr><td rowspan="5">도매 및 소매업</td><td>46102 中</td><td>담배 중개업</td></tr><tr><td>46~47 中</td><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td></tr><tr><td>46331, 3</td><td>주류, 담배 도매업</td></tr><tr><td>47859 中</td><td>성인용품 판매점</td></tr><tr><td>47993 中</td><td>다단계 방문판매</td></tr><tr><td>숙박 및 음식점업</td><td>5621</td><td>주점업</td></tr><tr><td rowspan="2">정보통신업</td><td>58 中</td><td>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tr><tr><td>59142</td><td>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td></tr><tr><td rowspan="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td>91113</td><td>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td></tr><tr><td>9124</td><td>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td></tr><tr><td>91291</td><td>무도장 운영업</td></tr></table>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지원제외 업종	제 조 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지원제외 업종																																
	제 조 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방법: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에 한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3.(목) PM 13:00 까지		
접수기간	■ 2026. 9. 1.(화) ~ 2026. 9. 3.(목) PM 13:00 까지		
접 수 처	■ 서식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wtp.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동 사업 공고 선택		
문 의 처	■ 문의처		
	특구	문의처	
		기관	e-mail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재)경남테크노파크	이진우 연구원 egnu72@gntp.or.kr ☎ 055-795-2275 함수연 전임연구원 suyeonham@gntp.or.kr ☎ 055-795-2274
유의사항	■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u>특구사업자가 아닌 자의 사업 신청은 미접수 처리됨</u>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중 타 지원과제와 중복수혜를 지양하기 위해 해외 실증 R&D 사업 등 재정지원과제 내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 계상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		
	■ 자세한 사항은 세부 신청서 내 유의사항 참조		